

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10 동두천시장이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2
- 다. 상정일자 :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제8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 재산 취득·처분 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취득·처분하고자 하며
-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함.

나. 제안이유

- 세아프라자 교차로 공중화장실 건축
세아프라자앞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교차로 보행자와 인접 시장상인등 다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취득예정 재산현황(건물)

재산의 표시			취득 면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
소재지	재산 형태	일단의 수량(㎡)					
생연동 809-2	건물	132.0	132.0	250,000	하반기	세아프라자 교차로 공중화장실 건축	동두천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아프라자 교차로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건물 132제곱미터, 2억5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,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